

제2509호
2017. 4. 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17-26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2
제2017-268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66
제2017-26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67호

이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8. 7.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랫동안 수정·보완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수정 등 상위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계 (서식수)	조례 (서식수)	규칙 (서식수)	훈령 (서식수)
9 (25)	1 (-)	7 (21)	1 (4)

※ 개정대상 자치법규 현황 : [붙임 1]

□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사항 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 단순 인용 규정 및 용어 수정 등 상위법규 제개정 미반영 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워 쓰기 등 정비

※ 입법형식 별 개정안 : [붙임 2·3·4]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932, FAX : 3396-8664, ysy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3396-49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대상 자치법규 목록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일괄개정 규칙안 1부.

4.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붙임 1]

일괄 정비 자치법규 현황

구분	제명	관련 조항 및 서식	소관 부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자치행정과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총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5호, 제7호·제8호서식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용자에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8·9호서식	가로환경과
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별지 1호~3호, 5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u>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u>생년월일(성별)</u> ----- ----- -----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제출) ----- -----<u>생년월일(성별)</u>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u>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생년월일(성별)</u>을----- ----- ----- -----. ③·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6호, 8호 및 9호서식을 별지 18부터 별지 2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보통	
			미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 번호		제 회 번		⑤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 (세)	③ 성 별 남 ☐ 여 ☐	④ 회망지역 제1지역 시 군		※ 등록심사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	㉠	
⑥ 현 주 소						(사진부착)		
⑦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⑧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⑨ 자 격 면 허				⑩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⑪ 특 기		⑫ 취 미		⑬ 운 동		⑭ 중 교		
⑮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⑯ 재산상황 가. 부동산(평) 나. 동 산(원)

⑰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⑱ 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호적초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수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인)

⑲
우
무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요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 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④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⑤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⑥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⑦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⑧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 ⑨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⑩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⑪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⑫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⑬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⑭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무 분 야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	화	번	(자택)	근	속	기	간	년	월	최	초	임	용	일	년	월	일									
										근	무	상	한	일	년	월	일									
수			당			청			구			액			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른
① 소속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⑤ 성명 한글 한자 ⑧ 전화번호(자택) ⑩ 정년일	③ 공무원 구분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⑨ 근속기간 년 월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재)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⑬ 정년 세(년) [] 임기제 년 월 [] 별정직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재)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직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 부서	→	지급결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 통지 소속 부서	→	지급 지방자치단체
---------------	---	-------------	---	---------------------	---	-----------------	---	--------------

<별지 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
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암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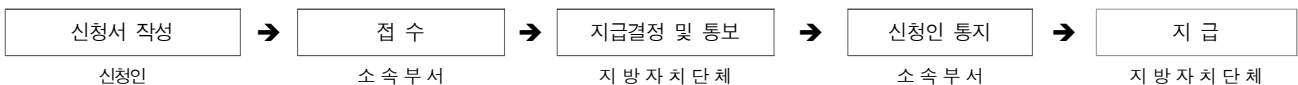
소속부서의 장

직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9>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10>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별지 6호 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명	회원명	주 소	<u>생년월일</u>	회 원 가입일	연락처	비고

<별지 1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현황	업체(상호)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계획	대부금운영 계 획			
	예상소득금액			
	대부금상환 계 획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용자구분	1 소득지원자금 2 생활안정자금	
귀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반기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대부조건 : 1. 대부금 상환은 년거치 년 회씩 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별지 1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차용증서	
1. 대여금액	금 원(W)
2. 대여기간	○ 거치기간 : . . 부터 . . 까지 ○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3. 이자율	○ 대여금리 : 년 % ○ 대출금리 : 년 %
4. 상환조건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16>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

○ 수혜가구현황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 화 번 호			
가족수	명	대 출 일 자		용 자 금 액		용 자 금 용 도	
상환기일	1차	(원)		2차	(원)		

○상환실적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회 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주소 변동 상황

변동년월일	변 동 주 소 지	세 대 주	기 록 자	비 고

○ 특기사항

월 일

작성년월일 : 년

작성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별지 17>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또는용자에관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기존시설: 대 ○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식재 형 태		공사 기간	. . .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1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트클럽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3.29)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9>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명칭)		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2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명	(한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 정 요 소</th> <th colspan="3">위 원 평 정</th> </tr> <tr> <th>상</th> <th>중</th> <th>하</th> </tr> </thead> <tbody> <tr> <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개</td> <td>개</td> <td>개</td> </tr> <tr> <td>위 원 서 명</td> <td colspan="3">성 명 (서명)</td> </tr> </tbody> </table>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 정 요 소</th> <th colspan="3">위 원 평 정</th> </tr> <tr> <th>상</th> <th>중</th> <th>하</th> </tr> </thead> <tbody> <tr> <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개</td> <td>개</td> <td>개</td> </tr> <tr> <td>위 원 서 명</td> <td colspan="3">성 명 (서명)</td> </tr> </tbody> </table>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table border="1"> <tbody>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td> <td></td> <td rowspan="3">판 정</td> <td>우 수</td> <td></td> </tr> <tr> <td></td> <td></td> <td>보 통</td> <td></td> </tr>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미 흡</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3">담 당 확 인</td> </tr> </tbody> </table>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table border="1"> <tbody>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td> <td></td> <td rowspan="3">판 정</td> <td>우 수</td> <td></td> </tr> <tr> <td></td> <td></td> <td>보 통</td> <td></td> </tr>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미 흡</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3">담 당 확 인</td> </tr> </tbody> </table>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 1인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 1인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필 적 감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평 정 요 소</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평 정</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th> <th style="text-align: center;">하</th> </tr> </thead> <tbody> <tr><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td></td><td></td><td></td></tr> <tr><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td></td><td></td><td></td></tr> <tr><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td></td><td></td><td></td></tr> <tr><td>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td><td></td><td></td><td></td></tr> <tr><td>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td></td><td></td><t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서 명</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td> </tr> </tbody> </table>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평 정 요 소</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평 정</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th> <th style="text-align: center;">하</th> </tr> </thead> <tbody> <tr><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td></td><td></td><td></td></tr> <tr><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td></td><td></td><td></td></tr> <tr><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td></td><td></td><td></td></tr> <tr><td>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td><td></td><td></td><td></td></tr> <tr><td>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td></td><td></td><t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서 명</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td> </tr> </tbody> </table>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판 정</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합 격</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합격</td> <td></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text-align: center;">답 당 확 인</td> <td></td> </tr> </table>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답 당 확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판 정</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합 격</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합격</td> <td></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text-align: center;">답 당 확 인</td> <td></td> </tr> </table>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답 당 확 인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답 당 확 인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 하십시오.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 하십시오.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회번 ※등급 직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⑥ 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등록번호 제회번 ※등급 직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⑤ 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④ 성별 ⑤ 희망지역 한글 (한문) · · · (세) 남 여 제1지역 시군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성별 ④ 희망지역 한글 (한문) · · · (세) 남 여 제1지역 시군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⑦ 현주소 ⑧ 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⑥ 현주소 ⑦ 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학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⑩ 자격면허 연월일 종 별										⑨ 자격면허 연월일 종 별									
⑪ 상 별 사 항										⑩ 상 별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⑪ 특 기 ⑫ 취 미 ⑬ 운 동 ⑭ 종 교									
⑯ 경 력 사 항 발령청										⑮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제1호서식]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무 분 야	< 사 제 >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 번	화 호 (자택)	근 속 기 간	년 월	최 초 임 용 일	년 월 일
				근 무 상 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당 청 구 액			산 내 출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원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 회원 명단						
경 로 당 명	회 원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호	회 원 가 입 일	연 락 처	비 고	경 로 당 명	회 원 명	주 소	생 년 월 일	회 원 가 입 일	연 락 처	비 고

- 43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대부신청서</td> <td>성 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 소</td> <td></td> <td>용자금액</td> <td></td> </tr> </table> 위 사람을 <u>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제7조</u>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19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부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자금액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대부신청서</td> <td>성 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 소</td> <td></td> <td>용자금액</td> <td></td> </tr> </table> 위 사람을 <u>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u>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대부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자금액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용자금액				용자구분	용자금액				용자구분																		
1 소득지원자금 2 생활안정자금					1. 소득지원자금 2 생활안정자금																						
귀하는 <u>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제7조</u>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반기 용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대부조건 : 1. 대부금 상환은 2년거치 년1회씩 2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5%입니다. 2. 연체시는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귀하는 <u>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u>의 규정에 의하여 년 반기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대부조건 : 1. 대부금 상환은 년거치 년 회씩 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용자구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용자구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용자금내역	원 금	금	원(W	)	용자금내역	원 금	금	원(W	)
	상환금액	금	원(W	)		상환금액	금	원(W	)
	상환잔액	금	원(W	)		상환잔액	금	원(W	)
	연장신청액	금	원(W	)		연장신청액	금	원(W	)
당초상환기간					당초상환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연장신청사유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현행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차용증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차용증서
1. 대여금액 금 원정(W)	1. 대여금액 금 원(W)
2. 대여기간 ○ 거치기간 : 19 . . 부터 19 . . 까지 ○ 상환기간 : 19 . . 부터 19 . . 까지	2. 대여기간 ○ 거치기간 : . . 부터 . . 까지 ○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3. 이자율 ○ 대여금리 : 년 4% ○ 대출금리 : 년 5%	3. 이자율 ○ 대여금리 : 년 % ○ 대출금리 : 년 %
4. 상환조건	4. 상환조건
5. 기 타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8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 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19 년 월 일 차용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현행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가구 관리카드

○ 수혜가구현황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 화 번 호	
가족수	명	대 출 일 자	용 자 금 액
			용 자 금 용 도
상환기일	1차	19 . . . (원)	2차
			19 . . . (원)

○상환실적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주소 변동 상황

변동년월일	변 동 주 소 지	세 대 주	기 록 자	비 고

○ 특기사항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

○ 수혜가구현황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 화 번 호	
가족수	명	대 출 일 자	용 자 금 액
			용 자 금 용 도
상환기일	1차	. . . (원)	2차
			. . . (원)

○상환실적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주소 변동 상황

변동년월일	변 동 주 소 지	세 대 주	기 록 자	비 고

○ 특기사항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
제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신청한 도로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4. 점용기간
5. 점용료	5. 점용료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면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 15.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납부의무자	① 성명 (명칭)		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199 년 월 일

____년 ____월 ____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도로법 제117조제4항</u> 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현행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제 호

수 신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86조의 2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u>생년월일</u>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행

[별지 제8호 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기존시설: 대				
					○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식재 형 태		공사 기간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기존시설: 대				
					○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식재 형 태		공사 기간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 용 목 적		거리가게 운영		⑥ 인 점 대 지	
⑦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⑧ 점 용 면 적 (가 로 x 세 로)	m × m = m ²
⑨ 점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 장 허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점 용 목 적		거 리 가 게 운 영		⑧ 인 접 대 지	
⑨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⑩ 점 용 면 적 (가로x세로)	m x m = m ²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 거 법 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 의 사 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서울중구



도로점용허가증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 운영시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증표를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0:00 ~ 00:00 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영업 종료 후에는 이동보관 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도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영업권은 별개로 취급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사망 등 작가가족 승계 사례는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영업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영업을 못하는 사유 발생 시는 사전에 구청장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 사항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리가게 영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 리 번 호	No.			운영자 사진
운 영 자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운 영 보 조 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시설정보				
설 치 일 자	. . .	제 작 사	(☎)	
인 접 지 주 소				
점 용 지 주 소				
점 용 면 적	m ²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 급 품 목				

거리가게 사진		
----------------	--	--

참고사항	
-------------	--

관리번호	No.
------	-----

이력 사항							
도로점용료	기준연도	산출기간	면적(m ²)	점용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거리가게 대 부 료	기준연도	산출기간	시설물 가 액	대부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위반사항내역	위반일자	위반사항	벌점	비고(관련규정 및 문서 등)	확인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⑥ 인접대지											
⑦ 점용장소 (도로주소)								⑧ 점용면적 (가로 x 세로)				m × m = m²							
⑨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용목적				거리가게 운영				⑥ 인접대지											
⑦ 점용장소 (도로주소)								⑧ 점용면적 (가로 x 세로)				m × m = m²							
⑨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자우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⑤ 허가번호									
⑥ 연장허가기간										⑥ 연장허가기간									
⑦ 점용목적										⑦ 점용목적									
⑧ 인접대지										⑧ 인접대지									
⑨ 점용장소 (도로주소)										⑨ 점용장소 (도로주소)									
⑩ 점용면적 (가로x세로)										⑩ 점용면적 (가로x세로)									
m x m = m ²										m x m = m ²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중구청장 귀하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⑪수수료									
1,000원										1,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생 략)

허 가 사 항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현행과 같음)

허 가 사 항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 리 번 호	No.		운영자 사진
운 영 자 명	주민등록번호	운영보조자 사진	
연 락 처			
주 소			
운 영 보 조 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시설정보			
설 치 일 자	.	제 작 사	(☎)
인 접 지 주 소			
점 용 지 주 소			
점 용 면 적	m ² (가로 m × 세로 m)	계약전 력	kw 일반용전력(갑)
취 급 품 목			

거리가게 사진

--	--

참고사항

--

(이하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 리 번 호	No.		운영자 사진
운 영 자 명	생년월일	운영보조자 사진	
연 락 처			
주 소			
운 영 보 조 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시설정보			
설 치 일 자	.	제 작 사	(☎)
인 접 지 주 소			
점 용 지 주 소			
점 용 면 적	m ² (가로 m × 세로 m)	계약전 력	kw 일반용전력(갑)
취 급 품 목			

거리가게 사진

--	--

참고사항

--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68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4. 5. ~ 2017. 4. 19.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62보06**외 3대
- 소유자명 : 우**외3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3. 1. ~ 3.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운행정지 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62보06**	우**	901209-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2017.03.28
18다34**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2017.03.21
11너70**	베르프컨설팅주식회사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2017.03.20
08누1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2017.03.1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6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시 동법시행령에 따라 COFIX 변동이자율 적용
-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식 및 수의매각 조건 규정을 행정자치부 지침과 일원화
- 관사관련 조항에 행자부 권고사항 반영, 기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판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3, FAX: 3396-8670, 전자우편 : 63dms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할재산**”을 “**할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건물 등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하며,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제1호 중 “**인접**”을 “**연접**”으로, “**경쟁**”을 “**입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입찰조건**”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 조건**”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바닥면적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

2. 부지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로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 중 “**인접한**”을 “**연접한**”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를 “**공무원이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1급·2급”을 “1급”으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46조에 위반한 때

제88조제3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8조의1 및 제88조의2를 각각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91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할 재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하며,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 -----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 연결----- ----- 입찰-----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취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바닥면적과 -----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times$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div$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 ⑦ (생략)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1.6.7)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④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합계 $\times$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 $\div$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

2. 부지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합계 $\times$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div$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 단
음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구유재산

②「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④ (생략)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율을 적용한 -----.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4. ----- 2012년 12월 31일 ----- ----- ----- -----.

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 ----- -----연 접한-----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7. ----- -----연접한----- -----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u>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u> 을 말한다.	제46조(정의) ----- ---- <u>공무원이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기</u>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u>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u>	제48조(사용허가) ----- ----- <u>1급 관사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u>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u>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u>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 -----. 2. <u>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46조에 위반한 때</u>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u>연 3퍼센트로 한다.</u>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u>
제88조의1 (생략) 제88조의2 (생략)	제88조의2 (현행 제88조의1과 같음) 제88조의3 (현행 제88조의2와 같음)
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u>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u> ③·④ (생략)	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 -----

한 구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2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또는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 감정평가
업자-----.

<삭 제>